제2차 일자리위원회 1호 안건
(2017. 8. 8)

일자리 중심
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

2017. 8. 8.

대통령직속
일자리위원회

대 통 령 직 속
일 자 리 위 원 회

순 서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추진 방향 ····· 2

Ⅲ. 추진 과제 ····· 3

1.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강화 ····· 3

2. 일자리 중심 정부지원 체계 개편 ····· 6

3. 일자리 중심 기관 평가·운영 ····· 17

[참고] 1. 세부 액션플랜
2. 부처별 이행계획

Ⅰ. 추진 배경

□ 일자리 위기 상황 ⇒ 정책과 제도의 전환 필요

○ **고용없는 저성장, 청년실업, 노동시장 격차 확대** 등 **일자리 위기**가 심화되면서 경제·사회의 안정성이 약화

<취업유발계수 추이(명/10억원)>

<저임금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(15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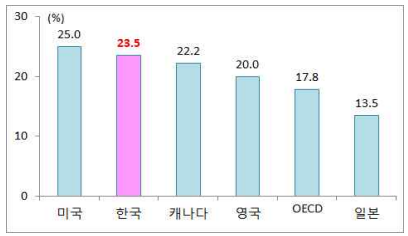

○ **새 정부**는 이에 대응한 핵심 경제비전으로 '**소득주도 성장**'과 '**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**'를 제시

- 정책의 중심을 **성장률·효율성**에서 **'일자리와 사람'**으로 전환하여 '**일자리-분배-성장**'의 선순환 구조 복원

□ '일자리 중심 국정운영'을 통한 '경제·사회 시스템 개혁' 추진

○ 일자리 경제는 기존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**정부 정책과 제도를 '일자리 중심'**으로 **전면 재설계**하는데 **중점**

- **일자리정책**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, 법제, 통계 등 **인프라를 강화**하고, 재정·세제·금융 등 **지원제도**를 **고용친화적으로 개편**

- 각종 **평가제도**를 **일자리 중심으로 정비**하여 정책 추진력 확보

○ 개별 사업 참여자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**민간의 의사결정 구조**도 **일자리 중심**으로 전환하는 **선도적** 역할 수행

⇨ 경제·사회 시스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'**지속가능한 성장**' 기반 창출, '국민에게 **안정적 삶의 터전**' 제공

Ⅱ. 추진 방향

비전: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실현

정책 목표: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

추진 전략	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강화	정부지원 체계 개편	일자리 중심 기관 평가
추진 과제	◇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◇ 정부·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전담조직 ◇ 입법 ◇ 통계 ◇ 홍보	◇ 예산 · 고용영향평가 · 일자리사업 혁신 · 타당성 심사제도 개편 등 ◇ 세제 ◇ 투자유치제도 ◇ 정책금융 ◇ 조달·공공계약 ◇ 인·허가 ◇ 인센티브·포상	◇ 정부업무평가 ◇ 지자체 합동평가 ◇ 공공기관 평가운영

Ⅲ. 추진 과제

1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강화

◇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**조직체계**를 구축하고, **입법·통계·홍보** 등 **정책 인프라**를 **일자리 중심으로 정비**

1 [일자리위원회 신설] 대통령 직속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

□ 일자리 정책의 **컨트롤타워**로서 범정부·산업·지역의 민·관 합동 일자리 정책을 수립·조정·협의·실천

○ 분야별 **전문위원회, 특별위원회**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및 정책 추진 동력 확보

* (전문위) 공공일자리 개선, 민간일자리 확대,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 구성
* (특별위) 특정 현안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

□ **일자리신문고**(www.jobs.go.kr) 개설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 고충 해결 및 정책 아이디어 수렴

* 총 11,472건 접수(6.4~8.3일): 비정규직 관련 7,061건, 공공부문 2,154건, 일자리창출 454건 등

2 [정부·지자체 조직] 일자리 정책 전담부서 지정 또는 신설

□ 양질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**일자리 정책** 총괄 **전담부서 지정 및 보강**

○ 부처협의를 거쳐 **전담부서**에 **일자리 총괄기능 및 명칭 부여**

○ 부처별 기능·인력현황 등을 감안하여 **일자리 전담인력 보강**

* 관련 직제 및 조직관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금년 중 시행

□ 지역별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방향을 공유·전파하고 지역 일자리정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**지자체 일자리 조직체계 구축**

○ **지자체**별로 업무체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**일자리 전담부서를 운영**하고, 지역일자리 추진 관련 총괄·조정기능 부여

*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 조직관리지침 수립·통보,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개정

3 [입법] 일자리 관련 입법의 신속추진 지원

□ 5년간의 '국정과제 입법계획'과 단년도 '정부입법계획'의 연계 관리로 **일자리 법안**의 **체계적·효율적 추진** 지원

* 국정과제 입법계획에 반영된 일자리 법안은 추진시기별 정부입법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추진상황 중점관리

○ **일자리 입법**에 대해서는 **사전입안지원, 사전법제심사,**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 협의 등 적극 지원

- **법률**은 **'18년까지 국회 제출·통과**를 목표로 집중관리하고, **하위법령**은 입법절차 간소화를 통해 **'18년 상반기 신속 정비**

○ 취업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학력차별 **법령* 일괄정비**

* (현행)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 자격취득 요건으로 인정 →
(개선) 독학사, 학점은행을 통해 취득한 학위도 자격취득 요건으로 인정

□ **고용의 양·질에 중대한 영향**을 미치는 **제·개정 법령**에 대해 **고용영향평가**를 실시하고 필요시 **법령 보완 권고**

○ 고용효과가 클 경우 **규개위·법제처 심사 Fast-track** 지원

4 [통계] 통계기반 일자리 정책·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

□ 일자리 양과 질, 동향 등을 상시 파악·점검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에 **「일자리 상황판」 설치·운영**

일자리 상황판 구성항목

항 목	내 용
일자리 상황	①고용률 ②취업자수* ③실업률 ④청년실업
일자리 창출	①취업유발계수 ②취업자 증감 ③창업(신설법인수) ④고용보험 신규취득
일자리 질	①임금격차 ②임금상승률 ③저임금근로자 ④비정규직 ⑤사회보험 가입률 ⑥근로시간
경제지표	①경제성장률 ②소비자물가 ③설비투자 증가율 ④수출입액

* 세부지표로 30대 기업별 취업자, 기간제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추가

□ 일자리 동향·증감·이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**세분화된 일자리 통계 개발·개선** 추진

○ 기업등록부 DB구축, 행정자료 입수주기 단축(년→분기/월) 등을 통해 **대한민국 일자리 데이터 허브 구축**

○ 기업규모별, 산업별 등 **일자리 행정통계**를 **세분화**하고 일자리 증감·이동 분석이 가능한 **일자리 동향통계 개발**

□ 지역단위 일자리 비교·분석이 가능하도록 **지역통계지표 서비스 확대·개편**

○ 고용률, 실업률, 구인·구직수, 사업체수 등을 지역단위로 제공

□ 국제기구(ILO, OECD, UN 등) 동향 및 국내실정을 반영한 **고용의 질 지표체계 개발** 및 관련통계 작성

5 [홍보] 일자리 체감형 홍보 확산

□ 각 부처 **사업 성과*** 발표, **현장 방문** 등을 '일자리 중심'으로 설계, 국민들이 일자리 관련 국정 운영 **변화를 체감**할 수 있도록 홍보

* (예시) 제도 신설로 신규 일자리 5,000개 창출, 간접 영향 포함 5년간 5만개 기대

○ 공문서·민원서류·우체국 택배박스 등 국민생활 접점 매체,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일자리정책 슬로건* 노출을 최대화

* 문구 예시: '단 1원의 국가 예산도 일자리로!', 'J노믹스는 일자리입니다'

○ 주요 부처 중심 **일자리 홍보협의회**를 운영, 부처별 일자리 정책 홍보추진상황 및 보완사항 점검을 통한 홍보제언 제공

○ **공익광고**(TV, 라디오)를 활용하여 일자리의 중요성 및 일자리 정책 등을 홍보('17.下~)

2 일자리중심 정부지원 체계 개편

◇ **예산·세제·금융·조달** 등 정부지원 체계를 **일자리 중심으로 개편**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유도

1. 예산 지원

(1) 사전 평가·편성 단계

1 고용영향평가 강화 →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

□ **예산사업은 평가대상 대폭 확대, 일자리 효과를 예산편성에 우선 고려**

○ **(평가대상 확대)** ①모든 일자리 사업 ②**연간 100억원 이상** R&D, SOC, 조달사업에 대해 평가 실시(249→1,000개 내외)

* 매년 대상사업을 예산편성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(부처 협의)

○ **(예산연계 강화)** 일자리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사업 성과(취업률, 고용유지율 등)를 종합·등급부여 → **예산 증감**

* (예시) 같은 유형 사업들을 상대평가하여 5단계 등급 부여 → ①A등급은 예산 증액, ②E등급은 예산 감액, ③신규 사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신설 검토 등

- 기타 비일자리 사업도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의 중요지표로 활용

○ **(평가 품질)** 부처 자체평가에서 **노동연구원 전담평가**로 변경, 산출식 지속 개선 등을 통해 **부처 부담 완화 및 정확성 제고**

* 산출기준(산업별 고용계수) 세분화, 주요사업(일자리사업 전체) 질적 고용효과 제시 등

□ **주요정책**은 **평가 결과**에 따라 **고용친화적으로 개선 유도**

○ 연구기관 간 **공동연구진 구성**, 평가 全과정에 **부처 참여** 등을 통해 **정확성 제고, 고용의 질**(고용형태·임금수준 등) 평가 강화

○ **부처협의**를 통해 **개선방안 도출→컨설팅 제공** 및 평가결과 DB 구축(이행 우수부처는 정부업무평가시 가점 부여)

□ **「고용영향평가 협의회」*** 운영, **평가자 실명제 실시**를 통해 평가체계를 지속 관리·개선하고 고용영향평가센터 인프라 강화

* (관계부처) 고용부·기재부·과기부·산업부·여가부
(연구기관) 노동연구원(고용영향평가센터), 한국은행, KDI, 산업연구원, 고용정보원 등

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

□ **중앙·지자체가 각각 추진**하고 있는 **일자리 사업**들이 **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활용**될 수 있도록 **조정기능 강화**

○ **(중앙정부) 일자리위원회**를 중심으로 **정부 전체 일자리사업**을 **총괄·조정**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과 연계한 절차* 마련

*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고용효과를 고려한 「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」을 일자리좇에서 확정하고, 이를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에 활용

○ **(지자체)** 일자리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기능*을 강화하고, 중앙·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추진

* ①중앙-지자체 간 유사·중복사업 점검, ②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정부 사업 요건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, ③고용부는 지자체 자체사업 성과관리 지원

□ **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국민**들이 **질 높은 일자리사업**을 **쉽게 알고 참여**하여 **민간일자리로 이동**할 수 있도록 개편·운영

○ **(민간일자리 이동지원)** 사업참여가 용이하도록 **50개 직접일자리 사업**을 묶어 **브랜드화**하고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강화*

* ①통합 사업안내·모집공고 실시, ②취업능력이 있는 참여자의 반복·중복참여 방지, ③참여 이후 직업훈련·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서비스기관 연계 강화

○ **(고용서비스·직업훈련 품질관리)** 고용서비스기관의 표준 품질 관리기준을 마련*하고 범정부차원의 직업훈련 통합관리체계 구축**

* 고용서비스품질센터를 신설하여 표준서비스 인증기준 제정

** 범부처 훈련사업의 주요사안을 논의하는 '(가칭)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회'를 구성하고, 고용부 산하 훈련품질관리기관을 범부처 직업훈련 성과지원 전문기관으로 확대

○ **(고용장려금 단순화)** 다양한 장려금사업을 **통합·단순화**하고, **온라인**에서 지원요건 확인 및 **즉시 신청**이 가능하도록 개선

□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*하고,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「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」을 마련

* ①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 점검→소관부처에 전달·조치, ②평가과정에 각 부처 참여 보장, ③평가결과 DB 구축, ④일자리사업평가조직 확대 등 인프라 강화

3 타당성 심사제도 개편

□ 각종 **재정·투자사업**의 **타당성 심사시 일자리 지표 강화**

○ 대규모 **재정사업**의 **예비타당성 조사시** 정책성 평가 내 포함된 **일자리 지표**(고용유발효과, 고용의 질 개선효과) **배점을 상향 조정**

* 고용효과 분석에 대한 평가방법론 개선도 병행(고용영향평가와 일관성 제고)

<사업별 평가비중(현행)>

① (건설사업) 경제성 40~50%, **정책성 25~35%**, 지역균형발전 25~30%
② (R&D) 경제성 30~40%, 기술성 40~50%, **정책성 20~30%**
③ (정보화사업) 경제성 40~50%, 기술성 30~40%, **정책성 20~30%**
④ (기타 재정사업) 경제성 25~50%, **정책성 50~75%**

- **예타 지침** 개정시 이를 **준용**하고 있는 **민간투자 적격성조사**에도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강화 가능

○ **공공기관 예비타당성** 조사시 **일자리 창출효과**를 정책성 항목에 **평가지표로 추가**

○ **지방재정투자심사시** 신규 투자사업의 고용유발효과를 산출* 하여 투자심사 자료로 활용

* 개별 사업별 직접고용효과, 간접고용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정

4 지자체 일자리 예산 확대

□ **지자체 예산편성기준**에 **일자리 사업** 예산을 **우선·집중 편성**하도록 안내하고, 지자체 대상 설명회 지속

○ **지역발전특별회계**(기재부), **보통교부세**(행안부) 등 배분시 일자리 확충 노력 및 성과 등을 반영

* (지특회계) 지역별 재원배분시 인센티브 항목에 일자리 확충 반영
* (보통교부세)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에 '일자리 확충노력' 지표 신설 등

[2] 집행단계

① 위탁·민자·공모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요소 반영

□ 정부 **위탁사업**, **민자사업**, 지자체 **공모사업** 등의 사업자 선정시 **사업자의 일자리 창출**(양·질) **계획**을 검토, **평가에 반영**

○ 재정사업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담당인력에 대한 **급여수준, 교육계획을 평가점수에 반영**

* (사례)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'17년부터 평가점수에 종사자 임금 수준(14점)과 교육훈련계획(6점)을 반영 → 종사자 인건비가 10% 인상(연 2,067→2,245만원)

- 위탁기관 선정 후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**상담인력 처우개선 계획 실천 여부**에 대해 **지속 모니터링** 및 **기관평가 반영**

○ 항만재개발사업, 도로건설사업 등 각종 **민자사업 사업자 선정** 시 **일자리 관련 가점 부여**

○ 각 부처의 **지자체 대상 공모사업** 선정 시 평정 지표로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확대

-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일자리 관련 항목이 旣 포함된 경우 가중치 상향, 없는 경우에는 신규 추가

* 현재 지자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나 평가지표로 '일자리 창출'은 배점이 낮거나 부재

② 개별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 우선 지원

□ **R&D, 창업, 중소기업 지원** 등의 지원대상 선정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**일자리 창출 계획**(양·질) **우수기업**을 **우대**

○ **(R&D) 자체 평가지침***을 개정하여 일자리 관련 R&D 사업 평가시 일자리 증가, 평균임금 등 **일자리 관련지표 비중 확대**

* 총 418개 평가대상 세부사업 중 일자리 관련 사업유형은 약 90여개

- 일자리 관련 R&D 사업 중간·종료 성과 평가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도에 따라 **'가점 부여'** 등 **추가 인센티브** 제공

○ **(창업)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**를 위해 **보육부터 성장까지** 전 단계를 **일자리 중심**으로 **지원체계 개편**

- **TIPS, 창업성공패키지,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사업화** 지원 대상 선정 시 **일자리 창출계획**을 평가에 포함

- **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기업**에 사업모델 혁신, 아이템 보강, **판로개척** 등 **후속지원을 강화**하여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유도

○ **(중소기업 지원) 수출, 국내판로, 인력, 컨설팅** 등 全 중소기업 지원사업*을 **일자리 우수기업 위주로 재편**

* '17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: 1,347개, 16.6조원(중앙 288개, 14.3조원+지방 1,059개, 2.3조원)

- 중소기업 지원사업 **선정지표에 일자리 창출 가능성 지표**를 추가하고, 일자리 창출 수준에 따라 **가점부여 등 우대**

- 대·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**기업-근로자간 성과공유* 도입여부** 및 공유 수준에 따라 **중소기업 지원사업 차등지원**

* 경영성과급, 스톡옵션, 우리사주 등 기업이 근로자에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방식

○ **(기타 재정사업)** 환경, 해양, 농식품 등 기타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시에도 일자리 지표를 적극 도입

* (예시) ①전문 환경기업 육성사업 지침을 고용연계형으로 개정
②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기업지원 등에 일자리 지표 추가
③농업법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농업법인 우선 선정 등

2. 세제

□ **일자리를 많이 창출**하고 **질을 높이는 기업**에게 **더 많은 세제혜택**이 돌아가도록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

< 주요 세제지원제도 재설계안 >

구분	제도	현행	개선
일자리 창출	▪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	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~8% 공제	고용증대세제로 개편하여 고용증가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적용 (1인당 300만원~2천만원)
	▪ 외투기업	조세감면 누적한도: 투자금액 50%+고용기준 40%	투자금액 50%+고용기준 50%
	▪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	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% 공제	적용기한 연장('20년까지 3년) 적용대상 확대(중소→중견), 공제율 조정(중소 10→30% 중견 15%)
일자리 질 제고	▪ 근로소득 증대세제	직전 3년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5%(중소·중견 10%) 세액공제	적용기한 연장('20년까지 3년)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(10→20%)
	▪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	정규직 전환 인원 당 중소 700만원 중견 500만원 세액공제	적용기한 연장('18년까지 1년) 중소기업 공제액 확대(1,000만원)
창업 지원	▪ 창업 벤처·중소기업 재산세 감면	취득세 75%, 재산세 50%, 등록면허세 100% 감면	적용기한 연장('17년 일몰도래) 재산세 감면 100%로 확대
	▪ 수도권 창업기업 취득세 중과 제외	수도권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4.4%~8% (제외업종은 첨단업종 등 33개)	혁신형 중소기업 등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포함 검토

□ **고용 관련 조세특례** 신설·일몰 연장 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**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**

○ 금년도 추진 중인 **예비타당성조사** 과제(국세 2건, 지방세 2건)에 대해 **고용창출효과**를 **시범분석**하고 **연말까지 도입방안 마련**

□ 전년대비 일정비율* 이상 **일자리 창출** 기업을 **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**하고, **납세담보 면제**(최대 1억원) **요건 완화****

* (세무조사)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: 2%, 3백억원~1천억원 미만: 4%

** (담보 면제)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% 이상 증가 → 2% 이상 증가

○ **개인사업자**도 정기 **세무조사 제외대상에 포함**하고, **청년창업 중소기업**의 경우 **고용증가비율** 계산에 **가중치** 부여(1명→1.5명)

□ 창업기업,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*에게 **관세** 관련 **세정지원 5대 패키지** 제공

* 수출비중 20% 이상이고 전년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으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

○ 관세조사 유예 또는 연기, 관세 납기연장·분할납부, 월별납부, 체납처분 유예, 담보제공 면제

3. 투자유치제도

□ **일자리 우수기업**은 **최우선적으로 지원**

○ **지방이전기업, 외국인투자, 유턴기업** 등 **유사 인센티브 제도를 단일 제도**로 통합하고 **'고용효과 중심'으로 전면 개편**

- 기업 입장에서 **꼭 필요한 지원을 손쉽게** 받을 수 있도록 **지역투자기업 전용 창구** 개설

○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 수립,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선정 등을 통해 **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**

- **도시재생과 연계**하여 창업·혁신공간, 문화·복지공간이 어우러진 **지역별 산업단지 혁신 2.0 추진**

※ 올해 말까지 「**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**를 위한 **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방안**」 마련

4. 정책금융

□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 등 **무역금융·보증**에 **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**을 **신규 도입**

○ **신청기준에 고용창출(유지) 지표*** **도입, 우대 대출조건** 등을 통해 **일자리 우수기업**에게 **무역금융 인센티브 제공**

* 직전년도 대비 고용증가율, 정부·지자체 고용우수기업 인증여부, 고용보험 가입여부, 정기교육 실시여부, 임금수준 등

□ **중진공·신보·기보** 등이 旣 운영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 확대

○ 신용등급, 매출액, 업력 등 **신청기준을 완화**하고, 서류 및 현장평가 시 급여수준, 근무환경 등 **질적 평가지표 추가 반영**

<旣 운영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 신청·지원기준 완화>

구 분	현 행	개 편(안)
중소기업진흥공단 (인재육성형 자금)	· 평가등급 5등급 이내(신용대출) 또는 8등급 이내(담보대출) 지원	· 평가등급 6등급 이내(신용대출) 또는 9등급 이내(담보대출) 지원
신용보증기금 (고용의질 우수기업 보증)	· 비상장중소기업 · 매출액 100억원 이상 · 설립후 5년 초과기업	· 비상장 및 코넥스기업으로 확대 · 업종별 매출기준 현실화 · 설립후 3년 초과기업
기술보증기금 (일자리창출기업우대보증)	. 창업후 5년이내 . 2개년 평균매출액증가율 15%이상 . 벤처, 이노비즈, 수출중소기업	. 창업후 7년이내 . 2개년 평균매출액증가율 10%이상 . 대상기업 제한기준 삭제

○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선 **융자한도를 확대**하고, **추가적 고용 창출**에 대한 **이자환급*** **제도 시행**

* (예시) 정규직 고용 1명당 0.1~0.2%p 이자환급(최대 2.0%p)

□ **국책은행 경영평가시 일자리 기업 지원실적 추가**

○ 국책은행 경영평가를 개선하여 **일자리 창출 우수기업**에 대한 **자금공급 실적** 평가를 대폭 확대

□ **일자리 창출에 기여**하는 **중소기업**에 대한 **지원을 강화**하는 방향으로 **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**

5. 조달 · 공공계약

□ **공공부문 입찰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**

○ **낙찰자 결정과정**에서 **일자리 창출 실적 · 계획의 비중이 강화**되도록 **신인도 평가체계 개편**

- **고용창출 우수기업**은 적격심사 신인도 **가점상한 확대**(3점→5점)

* 예) 고용창출 우수기업(3점)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(2점)인 경우
⇒ 신인도 가점 : (현행) 3점만 반영 → (개선) 5점까지 반영

○ **학술연구용역** 적격심사 기준(행안부) 제정 시 **신규고용 및 청년고용** 촉진기업에 대해 **가산점** 부여

□ **일자리 질 개선**을 위한 **공공계약 제도 개선**

○ **상습 · 고액 임금 체불,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**에 대해 **입찰 감점**을 부여하고, **중대 위반** 행위자는 **입찰 참여 제한**

○ 예정가격 산정시 **시중노임단가 적용**을 **의무화**하고, **노무비 구분관리 제도** 확대를 통해 **임금체불 최소화 유도**

○ **'가족친화인증기업'** 등 **근로환경 개선기업**에 용역입찰 **가점**을 **확대**하여 근무환경 개선 유도

* 개선방안 예시(현행 → 개선) : 가족친화인증기업 (1.7점→ 2.0점),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(0.5점 → 1.0점),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(1.0점 → 2.0점)

□ **벤처 · 중소기업**의 **공공조달시장 접근 애로 해소**

○ **다수공급자계약*** 물품을 일정 금액 이상** 구매할 경우 **최저가 낙찰제를 폐지**하여 업체간 출혈경쟁 방지

* 품질, 성능, 효율성 등이 유사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대상자로 하는 계약제도

**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,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

○ **소규모 조달**(2.1억원 미만) 일반제품의 **적격심사 낙찰하한**을 **상향 조정**(80.495%→84.245%)하여 중소기업에 적정가격 보장

○ 일정금액(2.1억원) 미만 물품·용역은 **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***하여 **우수 창업·중소기업**이 **공공조달시장**에 **참여**토록 유도

* 고난도 기술능력 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/3배 이내로 허용

○ **건설 엔지니어링분야**에 **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**('18)하고, **기술력**만 **평가**하는 **확정가격 최상설계** 시범사업을 **확대**

6. 인·허가 등 제도개선

□ **각종 특허, 허가, 인가시 일자리 우수 기업 우대**

○ **일자리 계획서**를 심사하여 일자리 창출·개선 효과가 큰 경우 **인·허가 절차 간소화, 기간단축, 평정가점** 등 인센티브 제공

* 예)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 비중 상향

○ 인·허가 발급 후에도 주기적(업종에 따라 1~3년)으로 **일자리 창출·개선 계획이 준수**되고 있는지 **이행실적 점검**

□ **공공택지** 내 **업무·상업 용도의 토지** 등 분양시 **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**

○ 공공청사 등 국·공유재산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도 일자리 우수업체에게 우선 임대하고, 사용료도 감면

□ **일자리 사업**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**발행한도 외 관리**가 가능하도록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마련

* 일자리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25% 범위내에서 추가발행 허용

※ **부처별 일자리중심 제도개선** 관련 세부과제는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**정부업무평가계획**에 **반영·점검**할 계획

7.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·포상

□ **전년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**이 높은 기업에 대해 **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** 및 **'고용탑'**(신설) **수여**

○ **인증 기업**에 대해서는 근로감독, 금융, 마케팅 등 **사업관련 지원**뿐 아니라 **출입국, 정부행사** 등에서도 **우대**

구 분	인센티브(예시)
근로감독	○ 고용 창출 우수기업 정기 감독 면제(3년간)
금융	○ 신용평가·금리 우대, 중소기업 융자한도 우대 등
지원	○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,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
마케팅 지원	○ '고용탑' 기업 일괄 홍보(신문, 일자리위·관련부처 홈페이지 등), 인증패 수여 등
출입국	○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시 Express line 이용,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 사증·체류 우대, (공항 라운지 이용 우대 신설)
정부 행사 좌석배치	○ 기업 간담회 등 좌석 배치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선 (고용부, 산업부, 중기청 등 관계부처 협조)
시설 이용	○ 공공기관 운영 행사장, 박물관 등 시설 사용 우대 기타 각 부처 소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 추가 발굴

□ 일자리 창출 실적이 탁월한 **민간기업인, 국민, 공무원** 등을 대상으로 훈장·포장 등 **정부포상 확대**

○ **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에 기여**한 기업인에 대한 **포상·홍보**를 통해 CEO의 '좋은 일자리 창출' 의지 독려

* 신규채용 근로자수, 정규직 전환실적, 청년·여성 고용비중 등을 고려

○ **일자리** 정책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**'대한민국 공무원상'** 수상자로 적극 선정·포상(기관별 인사상 우대조치 포함)

3 일자리중심 기관 평가·운영

◇ **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** 등에 대한 **평가 시스템**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**일자리정책의 지속적 추진동력 확보**

1 정부업무평가

□ **각 부처**의 일자리정책 추진을 **독려**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정부업무평가에 **'일자리' 평가**를 대폭 강화

○ **일자리 관련 국정과제**는 주요 국정과제(배점 50점)에 포함하여 평가

○ 국정과제 外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과제는 **별도의 '일자리 창출' 분야(배점 20점)**를 **신설**하여 평가

○ **규제개혁** 분야(배점 10점)도 **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중심**으로 평가

<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 >

2016년 평가		2017년 평가	
① 국정과제 핵심개혁과제(과제별 최대 ±2) 협 업(기관별 최대 ±1)	50	① 주요 국정과제(핵심정책과제 포함) 혁신관리 및 협업(기관별 최대 ±2)	50
② 규제개혁	20	② **일자리 창출**	20
③ 정책홍보	20	③ **규제개혁(일자리 규제개혁 포함)**	10
④ 정상화과제	10	④ 정책소통	10
⑤ 기관공통사항 (정부3.0 ±5, 성과관리 ±3, 특정시책 ±2)	±10	⑤ 국민만족도	10
		⑥ 기관공통사항 (현안관리 ±3, 갈등관리 ±3, 안권개선 ±2, 특정시책 ±2)	±10

□ **신설**된 **'일자리 창출' 평가**로 일자리 정책 **이행**을 **집중 관리**

○ **(추진체계) 일자리위원회-국무조정실 합동**으로 평가 수행

* 일자리위-국조실이 추천한 위원으로 '민관 합동 일자리과제 평가단' 구성 예정

○ **(평가방식)** '**일자리로드맵**' 등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**평가과제화**하고, 과제 난이도에 따라 부처를 **그룹화**하여 **상대평가**

* 평가항목(안): ①대상과제 평가 + ②공통지표 평가 + ③가점 등

2 지자체 합동평가

□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'18년도('17년 실적) **지자체 합동평가** 중 **일자리 창출 평가**를 **강화**

○ **일자리 창출** 분야 **별도 신설***로 지자체 일자리 창출 선도

* 전체 비중 : 4.3% → 9.1% ('17년 대비 212%)

○ **우수 지자체**에 대해서는 재정적 **인센티브** 제공(일자리 창출 분야 포함 특별교부세 지급)

< 주요 변경사항 >

'17년 합동평가* 분야	'18년 합동평가 분야(안)
① 중점과제	**① 일자리 창출(신설)**
- 지역복지기반 확충(32%)	② 중점과제
- **일자리 창출(39%)**	- 저출산 대책 - 축산방역강화
- 재난안전 및 대기질개선(29%)	- 미래사회 선도
② 일반행정, ③ 사회복지	③ 일반행정, ④ 사회복지
④ 보건위생, ⑤ 지역경제	⑤ 보건위생, ⑥ 지역경제
⑥ 지역개발, ⑦ 문화가족	⑦ 지역개발, ⑧ 문화가족
⑧ 환경산림, ⑨ 안전관리	⑨ 환경산림, ⑩ 안전관리,
	⑪ 지방규제혁신(추가)

3 공공기관 평가·운영

□ **(국가 공공기관)** 양질의 **일자리 창출을 선도**할 수 있도록 **경영평가, 예산·인력 관리제도 개선**

○ **'17년**은 평가지표에 **일자리 가점 항목(10점)***을 신설하고, **'18년**에 일자리 지표 등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**전면 개편**

* 신규채용 확대,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, 비정규직 전환실적, 혁신적 신규사업 시행 등

* (현행) 경영관리 50점 중 6점 (12%) → (개선) 가점 10점 포함시 총 60점 중 16점 (27%)

○ 공공서비스 향상 및 **좋은 일자리 창출노력**에 따라 **인력이 증가**된 경우 **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**

- '18년 편람 작성시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**노동생산성** 등 관련 **계량지표 수정** 추진

○ 공공기관이 **일자리 창출 효과**를 고려하여 **예산을 편성하고 집행**하도록 기본 원칙을 제시

*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·집행 지침 개정('18.1월)

○ **정원의 신축적 운영**이 가능하도록 **탄력정원 제도*** 도입

*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처우개선분,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기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

- **탄력정원 도입**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**청년고용 확대**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

○ **공공서비스 향상**과 현장인력 충원 필요시 **수시증원 협의**를 **적극 활용**하되, **경영효율성** 및 기존인력의 **생산성 제고노력 지속**

□ **(지방 공기업) 일자리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 구축**

○ **'일자리 확대'를 별도 평가지표**로 **신설***하고 **배점 상향**

* 세부 지표: (일자리 창출) 청년의무고용 비율 준수 여부 등 (0.6점→5점 내외)
(일자리 질 개선)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등 (1점→5점 내외)

○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**신규고용 창출**과 **지역경제 활성화**에 기여할 수 있도록 **지방공사**의 **부채비율 완화**

참고 1 세부 액션플랜

세부 과제	일정	부처
[1]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강화		
① (일자리위원회 신설) 대통령 직속 일자리 정책 콘트롤 타워		
▸ 일자리 정책 수립·조정·협의·실천	지속	일자리좇
▸ 일자리 신문고 운영	지속	〃
② (정부·지자체 조직)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 또는 신설		
▸ 일자리 전담지원체계 구축	'17.12	행안부
▸ 지자체 일자리 조직체계 구축	'17.12	〃
③ (법제) 일자리 관련 입법의 신속추진 지원		
▸ '국정과제 입법계획'과 '정부입법계획' 연계 관리	'17.12	법제처
▸ 일자리 입법 사전입안지원, 사전법제심사 등 적극 지원	'18.6	〃
▸ 학력차별 법령 일괄정비	'17.12	〃
▸ 고용 영향 제·개정 법령 고용영향 평가 실시	'17.12	고용부
④ (통계) 통계기반 일자리 정책·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		
▸ 일자리 상황판 설치·운영	지속	고용부
▸ 세분화된 일자리 통계 개발·개선	'18.12	통계청
▸ 지역통계지표 서비스 확대·개편	'18.12	〃
▸ 고용 질 지표 체계(안) 마련	'17.12	〃
⑤ (홍보) 일자리 체감형 홍보 확산		
▸ 일자리 정책 슬로건 노출	지속	공통
▸ 일자리 홍보협의회 운영	지속	문체부
▸ 공익광고 활용 일자리 정책 홍보	지속	일자리좇
[2] 일자리중심 정부지원 체계 개편		
①-1 (예산 사전평가·편성단계) 고용영향평가 강화		
▸ 평가대상 예산사업 확대 및 평가결과·예산편성 연계	'18.8	기재부 고용부
▸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이 개선되도록 제도화	'18.12	〃
①-2 (예산 사전평가·편성단계)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		
▸ 중앙·지자체 일자리사업 조정기능 강화	'18.3	고용부
▸ 국민들이 쉽게 참여토록 일자리사업 개편·운영	'18.1	〃
▸ "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" 마련	'18.6	〃

①-3 (예산 사전평가·편성단계) 예비타당성제도 개편		
► 대규모 재정사업 예타시 일자리 지표 강화	'17.12	기재부
►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내 고용유발효과 항목 신설	'17.12	행안부
►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일자리 창출효과 지표 추가	'17.12	기재부
①-4 (예산 사전평가·편성단계) 지자체 일자리 예산 확대		
►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일자리사업예산 우선·집중 편성	'17.12	행안부
► 지특회계, 보통교부세 등 배분시 일자리 성과 반영	'18.4	기재부 행안부
①-5 (예산 집행단계) 위탁·민자·공모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요소 반영		
► 재정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급여수준, 교육계획을 평가점수에 반영하고, 모니터링 실시	지속	공통
► 민자사업 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요소 추가	지속	공통
►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선정시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확대	'17.12	공통
①-6 (예산 집행단계)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 우선 지원		
► (R&D) 지원기업 선정지표에 일자리 비중 확대	'17.12	과기정통부
► (창업)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시 일자리 창출계획 평가 및 일자리 우수 창업기업에 후속 지원 강화	'17.12	중기부
► (중소기업 지원)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지표에 일자리 비중 확대 및 차등 지원	'17.12	〃
► (기타 재정사업) 환경, 해양, 농식품 등 기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지표 도입	'17.12	환경·해수·농식품부 등
② 세제		
► 일자리창출 기업에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제도 재설계	'17.12	기재부
► 고용 관련 조세특례 신설·일몰 연장 및 지방세 감면시 고용영향평가 단계적 도입	'17.12	기재부 행안부
► 일자리창출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및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	'17.12	국세청
► 창업기업, 일자리창출기업에 관세 관련 세정지원 5대 패키지 제공	'17.11	관세청
► 회생지원 징수유예제도 도입	'18.5	관세청
③ 투자유치제도		
► 유사 인센티브 제도 단일 통합 및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	'17.12	산업부
► 혁신도시중심으로 신지역성장거점 구축	'17.12	〃

④ 정책금융		
► 수은 무보 등 무역금융·보증에 일자리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 신규도입	'17.12	기재부 산업부
► 중진공·신보·기보 등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 지원요건 완화	'18.1	중기부 금융위
► 국책은행 경영평가시 일자리기업지원 실적 추가	'17.9	금융위
►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	'17.9	한은
⑤ 조달·공공계약		
►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를 위한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	'18.3	기재부 조달청
►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기준 제정시 신규고용 및 청년고용 촉진 기업 가산점 부여	'17.9	행안부
► 상습·고액 임금체불,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입찰 감점 부여 및 입찰 참여 제한	'18.6	기재부 조달청
►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 단가 적용 의무화 및 노무비 구분 관리 제도 확대	'17.11	기재부
► 근로환경 개선 기업 용역입찰 가점 확대	'17.11	조달청
► 다수공급자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	'17.8	조달청
► 소규모 조달 일반제품 적격심사 낙찰하한 상향 조정	'17.5	조달청
► 소규모 조달 실적제한기준 폐지	'17.11	기재부
►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 낙찰제 본격 시행 및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 사업 확대	'17.12	기재부 국토부
⑥ 인·허가제도 등		
► 특허, 허가, 인가시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및 이행실적 점검	지속	공통
► 공공택지내 업무상업 용도의 토지 등 분양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	'17.12	국토부
► 일자리 사업 지방채 발행 한도외 관리	'17.12	행안부
⑦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·포상		
► '고용탑'(신설) 수여 및 인센티브 부여	'18.3	고용부
► 일자리 창출·질제고 기여 기업인 포상·홍보	연중	고용부
► 일자리 창출 우수공무원 '대한민국 공무원상' 포상	'18.3	인사처
3 일자리중심 기관 평가·운영		
① 정부업무평가		
► 정부업무평가에 '일자리' 평가 대폭 강화	'17.9	국조실
► '일자리과제평가'를 통한 정책 이행 집중 관리	지속	일자리좇 국조실
② (지자체 합동평가) 지자체합동평가 일자리창출 평가 강화	'17.9	행안부
③ 공공기관 평가·운영		
► (중앙공공기관) 경영평가, 예산, 인력 관리제도 개선	'17.12	기재부
► (지방공기업) 일자리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 구축	'17.12	행안부

참고 2 부처별 이행과제

부 처	이행 과제
공통	▸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▸ 위탁·민자·공모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요소 반영 ▸ 특허·허가, 인가, 개별 사업 지원시 일자리 우수기업 최대 우대 ▸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맞춤형 홍보 확산
기재부	▸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편성 및 세제지원제도 재설계 ▸ 고용영향평가와 예산 연계 ▸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▸ 공공기관 경영평가, 예산, 인력관리 제도 개선
과기정통부	▸ R&D 지원기업 선정시 일자리 지표 비중 확대
행안부	▸ 정부·지자체 조직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 또는 신설 ▸ 지자체 일자리 예산 확대 및 지방세 제도 개편 ▸ 지자체 합동평가 일자리 창출평가 강화 ▸ 지방공기업 일자리 중심 경영평가 체계 구축 ▸ 일자리에 기여한 기업인, 국민,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
산업부	▸ 일자리 우수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투자유치제도 개편 ▸ 무역금융·보증에 일자리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 신규 도입
고용부	▸ 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 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▸ '고용탑'(신설) 수여 및 인센티브 부여
국토부	▸ 공공택지내 업무·상업 용도의 토지 등 분양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
국조실	▸ 정부업무평가에 일자리 평가 대폭 강화
금융위	▸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 확대 및 신청기준 완화 등 ▸ 국책은행 경영평가시 일자리 기업 지원 실적 추가
중기부	▸ 성장단계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 ▸ 全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자리 우수기업 위주로 개편
법제처	▸ 일자리 관련 입법 신속 추진 지원
국세청	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등 우대
관세청	▸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관세 관련 세정 지원
통계청	▸ 통계 기반 일자리 정책·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
조달청	▸ 공공부문 입찰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▸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 등